



조정 회의 요청

조정 회의를 요청해야 할 때

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정식 항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, 귀하는 **명시된 시간 기한 이내에**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(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)에 조정 회의를 요청함으로써 해당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조세부(Tax Department)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특정 세금 고지서
- 환급 청구 거부 및
- 면허, 등록 또는 면제 증서의 거부, 취소 또는 정지

조정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?

조정 회의는 정식 심리 없이 항의 건을 해결하는 더 빠르고 저렴한 방법입니다.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본인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본인을 대신해 출석할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, 당국 웹사이트에서 양식 POA-1(*Power of Attorney, 위임장*) 또는 ET-14(*Estate Tax Power of Attorney, 유산세 위임장*)와 같은 위임장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.
- 조정중재 서비스 사무국 공정 조정 위원이 나와 회의를 진행합니다. 부서 대표가 참석해 부서의 입장을 설명합니다. 조정 위원이 양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를 검토한 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시도합니다.
- 조정 회의 후 조정 위원이 귀하에게 *동의서* 형식으로 해결안을 발송합니다.
- 이 *동의서*에 동의하면 귀하는 여기에 서명해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에게 회신함으로써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정식 항의는 종결됩니다.
- 귀하가 *동의서*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조정 위원이 *조정 명령서*를 발부합니다. 이 명령서는 귀하가 조세 이의 부과(Division of Tax Appeals)에 심리 청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귀하와 부서에 구속력을 가집니다.

조정 회의 요청 방법

1. 온라인 회의를 요청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
 - 온라인 서비스 계정에 로그인 또는 개설합니다(www.tax.ny.gov에서).
 - 좌측 메뉴 중 서비스에서 *Respond to department notice(부서 통지서에 응답)*를 선택합니다.
 - 귀하가 받은 통지서를 준비해두고 안내에 따라 요청을 완료합니다.

2. 종이 양식

온라인으로 응답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양식 *CMS-1-MN(Request for Conciliation Conference, 조정 회의 요청서)*를 작성한 후 518-435-8554번으로 팩스를 발송하십시오. 선호하는 경우, 양식 CMS-1-MN을 아래 주소로 우송하거나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 배달 증명(certified) 또는 등기(registered) 우편을 권장합니다. 이렇게 하면 귀하가 요청서를 제시한 시간에 접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팩스: 518-435-8554 (선호)

우편: NYS TAX DEPARTMENT
BUREAU OF CONCILIATION AND MEDIATION SERVICES
W A HARRIMAN CAMPUS
ALBANY NY 12227-0918



회의 요청 방식과 관계없이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보내주십시오.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귀하가 항의하고자 하는 통지서 사본
- 적절히 작성한 위임장 양식(귀하가 본인을 대신해 출석할 사람을 지명하는 경우) 및
- 귀하의 항의 내용과 유관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일체 문서